

의안번호	제 2013 - 24 호
의 결	2013. 12. 23.
연 월 일	(제53차 회의)

의결안건

#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

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

### 1. 의결주문

「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양형기준 심의·의결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공청회 개최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「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」을 의결하여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

별지

#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

# |. 목적

-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,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·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
- 양형기준 설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 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

## Ⅱ. 공청회 일시·장소

○ 일시 : 2014. 2. 17.(월) 14:00 ~ 18:10

○ 장소 :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

# Ⅲ. 공청회 참석자

## 1. 진행 관련

○ 인사 말씀 : 양형위원회 위원장

○ 공청회 사회 : 상임위원

○ 개회식 진행 : 운영지원단장

#### 2. 양형기준안 발표자

- 수석전문위원
  - 양형기준안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전문위원단을 대표하여 수석전문 위원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소개를 담당
  - 전문위원 연구성과를 토대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양형기준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

## 3. 지정토론자

- 양형기준안 논의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양형에 관한 관심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, 교수, 시 민·사회단체 관계자, 유관기관 간부 등으로 구성
- 양형기준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토론자는 범죄별로 각 2인으로 구성

# Ⅳ. 공청회 일정

- 개회 선언
- 양형기준안 발표
- 지정토론
- 방청객 질의 및 답변
- () 폐회

# V. 공청회 진행(안)

## 1. 진행 순서

시 간	행사 내용	비고
14:00 ~ 14:05	개회식	운영지원단장
14:05 ~ 14:10	인사말씀	양형위원회 위원장
14:10 ~ 14:40	배임수증재,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	수석전문위원
14:40 ~ 15:40	지정토론 및 답변	지정토론자
15:40 ~ 15:50	방청객 질의 및 답변	
15:50 ~ 16:20	휴식	
16:20 ~ 16:50	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,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설명	수석전문위원
16:50 ~ 17:50	지정토론 및 답변	지정토론자
17:50 ~ 18:00	방청객 질의 및 답변	
18:00 ~ 18:10	마무리 및 폐회	운영지원단장

## 2. 토론 주제

#### 가. 대상 기준안

○ 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**배임수증재, 변호사법위반,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, 성매매범죄** 양형기준안

#### 나. 토론 쟁점

-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
-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
-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

#### 3. 발표 및 토론 방식

- 양형기준안 발표 및 지정토론자 토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형기준안 발표자가 준비된 양형기 준안을 소개한 후 지정토론자의 토론 진행
- 방청객 질의

  사회자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방청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진
  술하거나 질문하고 그에 대해 지정토론자와 전문위원이 답변하는
  방식으로 진행

#### 4. 기타 사항

- 공청회에서의 발표 및 의견진술 내용은 공청회 주제와 직접 관련 된 내용에 한정
-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, 그밖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